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30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30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8.04%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8.76%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신종 MMF(S-26 호)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30 일

4. 대비표

[신탁계약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투자 대상자산 등)	(생략) 1.~7. (생략) 8. 전자단기사채등	(현행과 동일) 1.~7. (현행과 동일) 8. 단기사채 등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① (생략) 1. (생략)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①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만기 80 일 이상 100 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나. (생략)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② (생략) 1.~4. (생략) 가.~다. (생략) 라. 전자단기사채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나. (현행과 동일)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②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동일) 가.~다. (현행과 동일) 라. 단기사채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①~③ (생략) <신설>	①~③ (현행과 동일)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단,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상금액: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 단,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지급시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table>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30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td></tr>
<tr><td></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전자단기사채 등</td><td>-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td></tr></table>
나. 투자제한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동일종목투자</td><td>-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나. (생략)</td></tr></table></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단기사채 등</td><td>-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td></tr></table>
나. 투자제한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동일종목투자</td><td>-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단, 만기 80 일 이상 100 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td></tr></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기타 투자 제한</td><td>-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td></tr>
<tr><td>투자 한도</td><td>① (생략)
1.~4. (생략)
가.~다. (생략)
라. 전자단기사채</td></tr>
</table>
</td>
<td>
<table>
<tr><td></td><td>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나. (현행과 동일)</td></tr>
<tr><td>기타 투자 제한</td><td>-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현행과 동일)</td></tr>
<tr><td>투자 한도</td><td>①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동일)
가.~다. (현행과 동일)
라. 단기사채</td></tr>
</table>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03%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td>
<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06%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td>
</tr>
<tr>
<td>제 2 부</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td>
</tr>
</table>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30 일

4. 대비표

[신탁계약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투자 대상자산 등)	(생략) 1.~7. (생략) 8. 전자단기사채등	(현행과 동일) 1.~7. (현행과 동일) 8. 단기사채 등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① (생략) 1. (생략)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①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만기 80 일 이상 100 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나. (생략)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② (생략) 1.~4. (생략) 가.~다. (생략) 라. 전자단기사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나. (현행과 동일)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②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동일) 가.~다. (현행과 동일) 라. 단기사채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생략)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30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td></tr>
<tr><td></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전자단기사채 등</td><td>-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td></tr></table>
나. 투자제한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동일종목투자</td><td>-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td></tr></table></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단기사채 등</td><td>-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td></tr></table>
나. 투자제한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동일종목투자</td><td>-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단, 만기 80 일 이상 100 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td></tr></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td><td>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나. (생략)</td></tr>
<tr><td>기타 투자 제한</td><td>-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td></tr>
<tr><td>투자 한도</td><td>① (생략)
1.~4. (생략)
가.~다. (생략)
라. 전자단기사채</td></tr>
</table>
</td>
<td>
<table>
<tr><td></td><td>“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나. (현행과 동일)</td></tr>
<tr><td>기타 투자 제한</td><td>-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현행과 동일)</td></tr>
<tr><td>투자 한도</td><td>①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동일)
가.~다. (현행과 동일)
라. 단기사채</td></tr>
</table>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td>
<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td>
</tr>
</table>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03%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06%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블루칩바스켓증권투자신탁(V-1 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30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요약정보]</td><td>투자비용
(생략)

<신설>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td><td>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table><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4">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h>동종유형 총보수</th></tr><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td><td>없음</td><td>1.1026</td><td>0.6000</td><td>-</td></tr><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td><td>없음</td><td>1.0526</td><td>0.5500</td><td>-</td></tr></table>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td></tr>
</table>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30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생략)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인컴&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전략 추가 및 투자신탁 명칭 변경
- 클래스 신설
- 환매수수료 삭제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30 일

4. 대비표

[신탁계약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 UBS 아름다운실버배당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하나 UBS 인컴&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 UBS 아름다운실버배당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으로 한다.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 하나 UBS 인컴&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으로 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종류 C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신설>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류 A 수익증권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종류 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3.종류 C 수익증권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4.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5.종류 C-F 수익증권 :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법시행령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3)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나 500 억 이상 매입한 법인 6.종류 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7.종류 C-P2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8.종류 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9.종류 C-P2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10.종류 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11.종류 I 수익증권: 고액거래자용

	2.종류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3.종류 A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4.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 12.종류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13.종류 A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4.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생략) <신설> 1.종류C 수익증권 <신설> 2.종류S 수익증권 3.종류AG 수익증권 4.종류CG 수익증권	①(생략, 현행과 동일) 1.종류 A 수익증권 2.종류 A-E 수익증권 3.종류 C 수익증권 4.종류 C-E 수익증권 5.종류 C-F 수익증권 6.종류 C-P 수익증권 7.종류 C-P2 수익증권 8.종류 C-PE 수익증권 9.종류 C-P2E 수익증권 10.종류 W 수익증권 11.종류 I 수익증권 12.종류 S 수익증권 13.종류 AG 수익증권 14.종류 CG 수익증권
제 39 조(보수)	③(생략)	③(생략, 현행과 동일)

	<신설>	[종류 A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9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A-E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2.45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7.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신설>	[종류 C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E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5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F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P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85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P2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2.85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PE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93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P2E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43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W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I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2.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S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2.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AG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2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G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S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1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A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2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5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제 40 조(판매수수료)	②(생략) <신설> 1.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30% 이내	②(생략, 현행과 동일) 1.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60% 이내 2.종류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30% 이내 3.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30% 이내
제 41 조(환매수수료)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90 일미만 : 이익금의 70% 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신설>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단,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보상금액: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 단,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3.지급시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펀드명</td><td>하나 UBS 아름다운실버배당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td><td>하나 UBS 인컴&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집합투자기구 명칭 관련하여 이하 같음.</td></tr>
<tr><td>[요약정보]</td><td>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전략]

1)주식부문

(생략)

<신설>

투자비용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4">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
<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h>동종유형 총보수</th></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td><td>없음</td><td>1.058</td><td>0.700</td><td>1.15</td></tr>
</table>
<신설>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5">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th></tr>
<tr><th>1 년</th><th>2 년</th><th>3 년</th><th>5 년</th><th>10 년</th></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td><td>109</td><td>223</td><td>343</td><td>601</td><td>1,367</td></tr>
</table>
</td><td>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전략]

1)주식부문

(생략)

・기 공모주 (IPO) : 전문가에 의한 기업가치 분석을 통한 안정적 성과를 추구(우량 기업의 신규 IPO 참여)

투자비용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4">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
<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h>동종유형 총보수</th></tr>
<tr><td>수수료선취-오프라인(A)</td><td>납입금액의 0.60% 이내</td><td>0.848</td><td>0.490</td><td>0.79</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td><td>없음</td><td>1.058</td><td>0.700</td><td>1.15</td></tr>
<tr><td>수수료선취-온라인(A-E)</td><td>납입금액의 0.30% 이내</td><td>0.603</td><td>0.245</td><td>0.55</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C-E)</td><td>없음</td><td>0.708</td><td>0.350</td><td>0.75</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td><td>없음</td><td>0.743</td><td>0.385</td><td>-</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td><td>없음</td><td>0.643</td><td>0.285</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5">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th></tr>
<tr><th>1 년</th><th>2 년</th><th>3 년</th><th>5 년</th><th>10 년</th></tr>
<tr><td>수수료선취-오프라인(A)</td><td>146</td><td>237</td><td>332</td><td>537</td><td>1,146</td></tr>
</table>
</td></tr>
</table>

	<신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09 223 343 601 1,367 수수료선취-온라인(A-E) 92 156 224 370 8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3 149 229 401 9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76 156 240 421 9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66 135 208 364 829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오프라인 클래스에 비해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 [A 형과 C 형], [A-E 형과 C-E 형]의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 [약 3 년]이나, 이는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전문인력 책임 : 김정표 부책임 : 허승찬(생략)	**운용전문인력** 책임 : 이왕섭 부책임 : 허승찬(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없음
	과세 <신설>	**과세** - **연금저축계좌의 세제(Class C-P, C-PE 수익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변경 전1]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2, C-P2E 수익자에 한함):**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변경 후1]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펀드명</td><td>하나 UBS 아름다운실버배당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td><td>하나 UBS 인컴&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집합투자기구 명칭 관련하여 이하 같음.</td></tr>
<tr><td>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table>
<tr><th colspan="2">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th><th>펀드코드</th></tr>
<tr><td colspan="2">하나 UBS 아름다운실버배당증권 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td><td>45473</td></tr>
<tr><td>C</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td><td>AR826</td></tr>
<tr><td>S</td><td>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td><td>AR222</td></tr>
<tr><td>AG</td><td>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td><td>BP499</td></tr>
<tr><td>CG</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td><td>BP500</td></tr>
</table>
<신설></td><td>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table>
<tr><th colspan="2">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th><th>펀드코드</th></tr>
<tr><td colspan="2">하나 UBS 인컴&공모주알파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td><td>45473</td></tr>
<tr><td>A</td><td>수수료선취-오프라인</td><td>DI545</td></tr>
<tr><td>A-E</td><td>수수료선취-온라인</td><td>DI964</td></tr>
<tr><td>C</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td><td>AR826</td></tr>
<tr><td>C-E</td><td>수수료미징구-온라인</td><td>DI965</td></tr>
<tr><td>C-F</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투자</td><td>DI966</td></tr>
<tr><td>C-P</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td><td>DI967</td></tr>
<tr><td>C-P2</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td><td>DI968</td></tr>
<tr><td>C-PE</td><td>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td><td>DI969</td></tr>
<tr><td>C-P2E</td><td>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td><td>DI970</td></tr>
<tr><td>W</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어카운트</td><td>DI971</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I</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투자</td><td>DI972</td></tr>
<tr><td>S</td><td>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td><td>AR222</td></tr>
<tr><td>AG</td><td>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td><td>BP499</td></tr>
<tr><td>CG</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td><td>BP500</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30 일
- 투자신탁 전략 추가 및 투자신탁 명칭 변경
- 클래스 신설(A, A-E, C-E, C-F, W, C-P, C-PE, C-P2, C-P2E, I)
- 환매수수료 삭제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정표→이왕섭)</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책임: 김정표
부책임 : 허승찬(생략)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책임: 이왕섭
부책임: 허승찬(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변경 전1]</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변경 후1]</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운용전략
1) 주식부문
· 배당성향이 높은 대형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여 연말까지 보유
· 기업수익 하락 등 예상배당수익률 낮아질 경우 교체매매
- 과거 배당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종목</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운용전략
1) 주식부문
· 배당성향이 높은 대형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여 연말까지 보유
· 기업수익 하락 등 예상배당수익률 낮아질 경우 교체매매
- 과거 배당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종목</td></tr>
</table>

<table>
<tr><td></td><td>- 향후 2개연도 이상 지속적인 배당이 예상되는 기업수익 호조 종목
<신설></td><td>- 향후 2개연도 이상 지속적인 배당이 예상되는 기업수익 호조 종목
· 공모주 (IPO) : 전문가에 의한 기업가치 분석을 통한 안정적 성과를 추구(우량 기업의 신규 IPO 참여)</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2) 가입대상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2) 가입대상
<table><tr><th>구분</th><th>가입자격</th></tr><tr><td>종류
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r><td>종류
C-P2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td></tr><tr><td>종류 I</td><td>고액거래자용 (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td></tr></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신설></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table><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tr><td colspan="2">나. 특수위험</td></tr><tr><td>공모주 투자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투자하며, 공모주 투자는 성격상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 공모주는 기존의 상장주식보다 일반적으로 가격변동성이 큽니다.
- 유리한 가격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투자된 자산의 환매가 제한되거나, 중단 또는 연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 과정에서 적정가격에 투자를 청산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공모주 투자는 투명하지 않은</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기업정보 및 미래 투자위험을
알려주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험을 수반합니다.</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변경 전 2]</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변경 후 2]</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table>
<tr><th>구 분</th><th>부담비율</th><th>비고(부담시기)</th></tr>
<tr><td>환매수수료</td><td>-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td><td>환매시</td></tr>
</table>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colspan="2">종류형명칭</th><th>선취판매수수료</th><th>후취판매수수료</th><th>환매수수료</th></tr>
<tr><td>C</td><td>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td><td>없음</td><td>없음</td><td rowspan="4">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td></tr>
<tr><td>S</td><td>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td><td>없음</td><td>3 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td></tr>
<tr><td>AG</td><td>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td><td>납입금액의
0.3% 이내</td><td>없음</td></tr>
<tr><td>CG</td><td>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td><td>없음</td><td>없음</td></tr>
</table>
<신설></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colspan="2">종류형명칭</th><th>선취판매수수료</th><th>후취판매수수료</th><th>환매수수료</th></tr>
<tr><td>A</td><td>수수료선취-
오프라인</td><td>납입금액의
0.60% 이내</td><td>없음</td><td rowspan="9">없음</td></tr>
<tr><td>A-E</td><td>수수료선취-
온라인</td><td>납임금액의
0.30% 이내</td><td>없음</td></tr>
<tr><td>C</td><td>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td><td>없음</td><td>없음</td></tr>
<tr><td>C-E</td><td>수수료미징구-
온라인</td><td>없음</td><td>없음</td></tr>
<tr><td>C-F</td><td>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투자</td><td>없음</td><td>없음</td></tr>
<tr><td>C-P</td><td>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td><td>없음</td><td>없음</td></tr>
<tr><td>C-P2</td><td>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td><td>없음</td><td>없음</td></tr>
<tr><td>C-PE</td><td>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td><td>없음</td><td>없음</td></tr>
<tr><td>C-P2E</td><td>수수료미징구-
온라인-</td><td>없음</td><td>없음</td></tr>
</table></td></tr>
</table>

	퇴직연금		
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어카운트	없음	없음
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투자	없음	없음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없음	3 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납입금액의 0.3% 이내	없음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없음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총 보수**
C	0.3000	0.7000	0.0400	0.0180	**1.0580**
S	0.3000	0.2500	0.0400	0.0180	**0.6080**
AG	0.3000	0.1200	0.0400	0.0180	**0.4780**
CG	0.3000	0.1500	0.0400	0.0180	**0.5080**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C	109	223	343	601	1,367
S	62	128	196	344	784
AG	79	130	184	300	644
CG	52	107	164	288	655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총 보수**
A	0.300	0.490	0.040	0.018	**0.848**
A-E	0.300	0.245	0.040	0.018	**0.603**
C	0.300	0.700	0.040	0.018	**1.058**
C-E	0.300	0.350	0.040	0.018	**0.708**
C-F	0.300	0.030	0.040	0.018	**0.388**
C-P	0.300	0.385	0.040	0.018	**0.743**
C-P2	0.300	0.285	0.040	0.018	**0.643**
C-PE	0.300	0.193	0.040	0.018	**0.551**
C-P2E	0.300	0.143	0.040	0.018	**0.501**
W	0.300	0.000	0.040	0.018	**0.358**
I	0.300	0.200	0.040	0.018	**0.558**
S	0.300	0.110	0.040	0.018	**0.468**
AG	0.300	0.120	0.040	0.018	**0.478**
CG	0.300	0.150	0.040	0.018	**0.508**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A	146	237	332	537	1,146
A-E	92	156	224	370	805
C	109	223	342	600	1,366
C-E	73	149	229	401	913
C-F	40	82	125	220	500

<table>
<tr><td></td><td><신설></td><td>
<table>
<tr><td>C-P</td><td>76</td><td>156</td><td>240</td><td>421</td><td>958</td></tr>
<tr><td>C-P2</td><td>66</td><td>135</td><td>208</td><td>364</td><td>829</td></tr>
<tr><td>C-PE</td><td>56</td><td>116</td><td>178</td><td>312</td><td>710</td></tr>
<tr><td>C-P2E</td><td>51</td><td>105</td><td>162</td><td>284</td><td>646</td></tr>
<tr><td>W</td><td>37</td><td>75</td><td>116</td><td>203</td><td>461</td></tr>
<tr><td>I</td><td>57</td><td>117</td><td>180</td><td>316</td><td>719</td></tr>
<tr><td>S</td><td>48</td><td>98</td><td>151</td><td>265</td><td>603</td></tr>
<tr><td>AG</td><td>79</td><td>130</td><td>184</td><td>300</td><td>644</td></tr>
<tr><td>CG</td><td>52</td><td>107</td><td>164</td><td>288</td><td>655</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신설></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 후 3]</td></tr>
<tr><td>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td>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td>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tr>
</table>

[변경 전 1]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변경 후 1]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수수료	**선취(A)**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기관 및 법인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정금전신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변경 전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종류 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변경 후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A-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종류 C-F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 법시행령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3)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나 500 억 이상 매입한 법인
종류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종류 C-P2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종류 W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종류 I	고액거래자용(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종류 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변경 후 3]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 년 12 월 31 일까지「소득세법」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인 Best 플러스증권자투자회사(제 2 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회사 감독이사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30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생략)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30 일 - 감독이사 변경(이철훈→강성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이철훈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강성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SmartUpPlus 포커스포트폴리오증권투자신탁 (제 4 호)[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30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등급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2 등급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30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3→2)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4.88%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7.55%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China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30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요약정보]</td><td>**투자비용**
(생략)

<신설>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td><td>**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table><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4">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h>동종유형 총보수</th></tr><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td><td>없음</td><td>1.668</td><td>0.640</td><td>-</td></tr><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td><td>없음</td><td>1.568</td><td>0.540</td><td>-</td></tr></table>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td></tr>
</table>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30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2.62%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2.60%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월지급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H)

2. 주요 변경내용

- 간이투자설명서의 투자비용 주석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30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요약정보]</td><td>투자비용
<신설>

* 총보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약 연 0.55%)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포함)·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td><td>투자비용
<table><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4">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h>동종유형 총보수</th></tr><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td><td>없음</td><td>1.060</td><td>0.700</td><td>-</td></tr><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td><td>없음</td><td>0.860</td><td>0.500</td><td>-</td></tr></table>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약 연 0.55%)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1,000 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및 피투자지구의 비용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포함)·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td></tr>
</table>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예시의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5%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30 일 - 간이투자설명서의 투자비용 주석 변경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글로벌리츠온리원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30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요약정보]</td><td>투자비용
(생략)

<신설>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td><td>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table><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4">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h>동종유형 총보수</th></tr><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td><td>없음</td><td>1.199</td><td>0.539</td><td>-</td></tr><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td><td>없음</td><td>1.099</td><td>0.439</td><td>-</td></tr></table>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td></tr>
</table>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30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생략)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